

[상품 요약서]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해당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가.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 보험종목별 가입대상

구 분		가입 대상
개 인 용 群	개인용애니카자동차보험	개인소유 승용차종
	개인용애니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개인용애니카 다이렉트자동차보험(TM/직판)	
	개인용애니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플랫폼)	
업 무 용 群	업무용애니카개인소유자동차보험	개인용 제외 비사업용 차종
	업무용애니카법인소유자동차보험	
	업무용애니카개인소유다이렉트자동차보험	
	업무용애니카법인소유다이렉트자동차보험	
	업무용애니카개인소유 다이렉트자동차보험(TM/직판)	
	업무용애니카법인소유 다이렉트자동차보험(TM/직판)	
영 업 용 群	영업용애니카 개인면허 자동차보험	개인소유 화물자동차, 개인택시
	영업용애니카 개인면허 다이렉트자동차보험(TM/직판)	
	영업용애니카 개인면허 다이렉트자동차보험	
	영업용애니카 화물 · 특수 자동차보험	법인소유 화물자동차, 특정용도자동차, 특수작업용자동차, 캠핑자동차
	영업용애니카 화물 · 특수 다이렉트자동차보험(TM/직판)	
	영업용애니카 버스 · 택시 자동차보험	승합자동차(학생통학용 마을버스 포함), 일반택시, 장의차
	영업용애니카 버스 · 택시 다이렉트자동차보험(TM/직판)	
	영업용애니카 대여자동차보험	대여자동차
	영업용애니카 대여 다이렉트자동차보험(TM/직판)	
	영업용애니카 건설기계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건설기계, 일반 건설기계
	영업용애니카 건설기계 다이렉트자동차보험(TM/직판)	

이 륜 차 群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차 (오토바이)
	이륜다이렉트자동차보험	
	이륜다이렉트자동차보험(TM/직판)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자동차 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
농기계보험		경운기, 트랙터, 콤팩트
운전자보험Ⅱ		운전자
음주단속경찰관자동차보험		음주단속경찰관
삼성애니카랜드자동차보험		애니카랜드 정비업체
원데이애니카자동차보험		타인소유 승용차, 대여자동차
플랫폼 배달업자 이륜자동차보험		의무보험 가입한 이륜자동차
중고차매매업자 자동차보험		중고 상품용 승용자동차

□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 ① 대상 :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또는 기존 가입기간 동안 사고를 여러번 야기하여 보험 회사가 인수를 거절한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 ② 취지 : 인수거절된 가입자에게 종합보험 가입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무보험자동차 양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및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나.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 의무보험 관련사항

① 정 의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의거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을 의미합니다.

② 보상한도

구 분		'05.2.22~'16.3.31일 중의 사고	'16.4.1일 이후의 사고
대 인 I	사망	최고 1억원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2,000만원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원	최고 1억5,000만원
대물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상

③ 특징

- 강제보험성 : 자배법에 근거한 강제보험, 자동차보유자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반면 보험회사에게도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인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 제한 : 의무보험의 경우는 계약자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의 말소등록(이륜차는 사용폐지)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도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더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중복계약의 경우 등
- 유한보상제
 - 대인배상 : 보험가입금액은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액이며, 1사고당 한도는 없습니다.
 - 대물배상 : 보험가입금액은 1사고당 한도입니다.
-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인정
 - 피보험자에게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 자배법에 의거하여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보유불명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시 대인배상 I 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다음의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2.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④ 의무보험 가입대상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
- ※ 덤프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타이어식 기중기,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

⑤ 의무보험 미가입시 제재

○ 미가입시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대인Ⅰ	대물	대인Ⅰ	대물	대인Ⅰ	대물
10일이내	1만원	5,000원	3만원	5,000원	6,000원	3,000원
매1일 초과	4,000원	2,000원	8,000원	2,000원	1,200원	600원
최고한도	60만원	30만원	10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자배법 시행령 [별표 5]

○ 미가입운행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담보내용

① 대인배상 I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자배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② 대인배상 II

○보상범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 I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구 분	내 용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	사망, 부상, 후유장애
비 용	손해방지 및 경감비용, 권리보전과 행사비용, 긴급조치비용,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기 타	확정판결에 의한 지연배상금

○보상한도 : 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특징 : 대인 I 초과손해 보상

③ 대물배상

○보상범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생긴 피해자의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구 분	내 용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	- 직접손해 : 수리비용, 교환가액 - 간접손해 :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비 용	손해방지 및 경감비용, 권리보전과 행사비용, 긴급조치비용,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기 타	확정판결에 의한 지연배상금

○보상한도 : 1사고당 2천만원

(대물배상확대 특별약관 보상한도 : 1사고당 3/5/7천만원, 1/2/3/5/10/20억원)

④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보상범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1)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보상한도

구 분		사망/부상/후유장애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 금액	자기 신체 사고	1,500만원/1,500만원(3,000만원)/1,500만원
		3,000만원/1,500만원(3,000만원)/3,000만원
		5,000만원/1,500만원(3,000만원)/5,000만원
		1억원/1,500만원(3,000만원)/1억원
	자동차 상해	1,500만원/1,500만원(2,000만원, 3,000만원)/1,500만원
		3,000만원/1,500만원(2,000만원, 3,000만원)/3,000만원
		5,000만원/1,500만원(2,000만원, 3,000만원)/5,000만원
		7,000만원/1,500만원(2,000만원, 3,000만원)/7,000만원
		1억원/1,500만원(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1,500만원(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2억원
		3억원/1,500만원(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3억원
		5억원/5,000만원(1억원)/5억원
		7억원/5,000만원(1억원, 2억원, 5억원)/7억원
		10억원/5,000만원(1억원, 2억원, 5억원)/10억원

※ 보험 종목별 가입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⑤ 자기차량손해

○ 보상범위

피보험자동차의 다른자동차(차량등록번호와 소유자나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에 한함)와의 충돌, 접촉에 의한 손해와 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중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보상한도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소 자기부담금과 최대 자기부담금을 한도로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금액

⑥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 보상범위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에 의한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 가입조건 : 대인배상 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징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담보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가능

□ 주요 면책사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담보종목		주요 면책사항
대인배상 I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임 의 담 보	공통 적용	-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영업용 자동차보험은 제외)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단,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

담보종목		주요 면책사항
임 의 담 보	대인Ⅱ	- 피보험자 또는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 -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대물 배상 (확대)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신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의 소지품에 생긴 손해(단,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손 보상)
	자기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	- 피보험자가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 피보험자가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
	자기차량 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착, 녹 등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중 발생한 사고

□ 주요 특별약관

①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약관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등

② 운전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특별약관

특정연령 미만의 운전자가 운전중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운전자 연령 만 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운전자 연령 만 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운전자 연령 만 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운전자 연령 만 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운전자 연령 만 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운전자 연령 만 43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운전자 연령 만 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등

③ 보험료 납입관련 특별약관

-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 보험계약자가 납입할 1년간의 보험료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약관입니다.
-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 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 납입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특별약관입니다.
- 보험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을 보험기간 시기로 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특별약관입니다.

④ 기타

-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 양수인이 양도일 이후 15일 이내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를 야기한 경우 대인 I 의 보상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는 특별약관입니다.
-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중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를 일으켰을 때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자동차의 보험계약으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을 보상합니다.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으로서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다목적 포함), 경/3종승합, 초소형/경/4종화물자동차이면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 보통약관에서는 비사업용 차량의 경우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나, 이 특약에 가입하면 유상운송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다. 보험료 분석표

저희 삼성화재 인터넷 홈페이지 www.samsungfire.com 「보험가격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험료 산출 기초

□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에 예정부가율(예정부가보험료)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예정부가율(예정부가보험료)은 예정이익율과 예정사업비율(예정사업비)로 구성됩니다.

(단위 : %)

구 분		손해율	사업비율	이익률
비사업용	책임보험	71.28	28.72	0.00
	임의보험	73.52	24.48	2.00
사업용	책임보험	84.33	15.67	0.00
	임의보험	79.77	18.23	2.00

※ 오프라인 기준

자동차보험 Q&A

Q) 의무보험에 미가입 시의 불이익은?

A)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한 채 운행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Q) 음주운전 중 사고에 대한 보상여부는?

A) 음주운전 중 사고 발생시에도 자기차량손해를 제외한 담보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으로 회사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Q) 혼자만 운전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A) 「기명피보험자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하시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Q) 만21세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기간 도중 연령이 만26세가 되었는데 특약변경으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현재 유지가 되어 있는 계약에서 연령한정특약을 변경할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Q) 본인명의의 자동차보험에 가족한정특약을 들었는데 동생이 운전 중 사고시의 보상여부?

A) 형제자매는 가족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삼성화재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Q) 무사고시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A) 과거3년 및 평가대상기간 중 무사고인 경우 자동차보험 갱신 시 적용등급이 낮아져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Q) 밤새 주차중인 차량을 누군가 파손한 경우의 보상여부는?

A)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액에 따라 할증이 적용됩니다.

- Q) 군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A) 하사관 이하의 계급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이 발급한 '군 운전경력 확인서' 또는 병무청 확인서류를 제출하시면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본인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 시 친구의 차량(가족한정특약가입)을 운전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A) 무보험상해 담보에 가입하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하시면, 상기와 같은 경우 책임보험은 친구의 차량으로 책임보험 이외(대인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는 본인명의로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능 합니다.
- Q) 가족한정특약과 26세 이상 한정특약을 가입했는데 이 경우 친구가 운전 중 사고 시 대물배상이 가능한지 여부?
- A) 친구는 가족에 해당되지 않아 대물배상은 불가능합니다.